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1.

발 의 자 : 안상훈 · 최보윤 · 박덕흠
고동진 · 배현진 · 김미애
한기호 · 박성훈 · 김소희
주호영 · 김은혜 · 정연욱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,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, 뇌동맥류, 심부전, 부정맥,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한편,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,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.

또한, 현행법은 「암관리법」, 「치매관리법」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
마지막으로,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,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, 심부전, 부정맥,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,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,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,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,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,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, 심부전, 부정맥,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(안 제2조제1호).

나.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,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항, 제2항제3호 및 제4항).

다.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

수행하도록 하고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).

라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).

마.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, 지정 기준·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,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·감독 불이행 시 지정명령 및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).

바.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,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14조).

사.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,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
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2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
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
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심혈관질환”을 “심장혈관질환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심혈관질환”을 “심장혈관질환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뇌졸중 등”을 “뇌졸중, 뇌동맥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심부전

마. 부정맥

바. 판막질환

제8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예방·치료·재활”을 “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(이하 “국민건강증진기금”이라 한다)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등록통계사업”을 “등록통계사업(질병관리청장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코호트 조사”를 “코호트 조사(질병관리청장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 등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,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
3.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1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의2(벌칙)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<u>심혈관 질환</u> ,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	1. ----- <u>심장혈관질환</u> ----- ----- -----.
가. 심근경색 등 <u>심혈관질환</u>	가. ----- <u>심장혈관질환</u>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뇌졸중</u> 등 뇌혈관질환	다. <u>뇌졸중</u> , 뇌동맥류 등----- -----
<신 설>	<u>라. 심부전</u>
<신 설>	<u>마. 부정맥</u>
<신 설>	<u>바. 판막질환</u>
<u>라. ~ 바.</u> (생 략)	<u>사. ~ 자.</u> (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)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,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·개발 사업을(이하 “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	제8조(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
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
을 포함한다.

1. 2. (생 략)

3. 심뇌혈관질환 예방·치료·
재활을 위한 중개·임상 연구

4. ~ 7. (생 략)

③ (생 략)

<신 설>

제9조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)

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
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
질환의 발생, 진료 및 재활에
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
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심뇌혈
관질환 발생률·재발률, 심뇌혈
관질환에 따른 사망률, 유병력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예방·진단
· 치료· 재활-----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
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
관질환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
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
국민건강증진기금(이하 “국민
건강증진기금”이라 한다)에서
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)

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
리청장-----

자의 재할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·통계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하며,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
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
사업을 포함한다.

1.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

2.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

3.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

환을 진단·치료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④ (생략)

제10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 ①

· ② (생략)

<신 설>

리청장

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10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
③ (생 략)
제12조(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
지정) ① (생 략)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
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
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
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2조(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
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
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
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
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
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
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
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
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
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
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
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
경우

2.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
미달한 경우

3.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
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
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
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9조의2(개인정보의 목적 외
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라 심뇌
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
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「개인
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
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
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
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
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
니 된다.

제20조의2(벌칙) 제19조의2를
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 법에
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
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
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
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